

제43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31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4.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0)

상정된 안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3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3
4.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3
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3
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0) 3

(10시49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8월 26일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박균택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동아 위원님이 보임되었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김동아 위원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반갑습니다.

전반기 법사위 때 법안1소위를 잠시 했었는데 오늘 사·보임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사법적인 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 그리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는 단순히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법률 전반에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부칙을 통해 130개의 법률의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성폭력·스토킹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전건송치 관련 법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실체적 내용의 수정이 일부 필요한 법률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일괄 정비법을 위원회 안으로 마련하여 일괄 정비법과 함께 공수처법·상설특검법·형사사법전자화법 등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언론인 여러분……

○박형수 위원 언론 공개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있는 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소위원회의 지금까지의 관례는 언론을 퇴장시킨 후에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오늘은 위원장님이 언론이 있는 상태에서 소위원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제부터 제가 소위원장님한테 소위원장님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오늘 진행을 소위원장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김승원 소위원장이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충돌 우려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방향을 잡지 못해 가지고 지금 1시간 이상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대처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진행되는 법안 중에서 형소법 개정안은 대단히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논의 과정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회의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에서 재제청이라는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행위를 했습니다. 여

기 오늘 법안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부터는 김승원 장관 지명자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혹시 여당 쪽에서도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안1소위는 제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기 이전에 이미 회의를 진행하기로 공지가 된 회의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늦어지게 된 것은 오늘 사법부 대법원장의 애사가 있어서 2시 전체회의에 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점,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약 130여 개의 관련 법률의 용어 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법 하나하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안위에서도 일괄 정비법으로써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의 용어 정리라든가 체계 정리는 그렇게 처리된 선례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 안건이 불법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후보 재제청에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안건과 함께 현안질의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여겨져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에서 다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소위는 관례와 같이 비공개로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박형수 간사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인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4. 공소청범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0)
- (10시56분)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개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상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먼저 보고 좀 하고요.

○**곽규택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진행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보고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할 게 있다니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 하고 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두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검사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재수사요구를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건 송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4페이지 오른쪽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부칙에서 두 법률안 모두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시행일에 맞추고 있고요 적용례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 없지만 ‘수사 중’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새로운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사가 재수사요구권을 가지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종결이 됐고 아직 재수사요구는 없는 단계가 수사 중이라고 볼 수 있을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이 법에서는 제2조에서 15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14조의2, 14조의3 등 개정으로 인한 가지번호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해석을 위해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통해 경찰 단계의 재검토 절차를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개시 단계에서 적용되는 죄명으로 인해서 송치 여부에 대한 절차가 달라진다고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다음으로 경찰의 잘못된 수사종결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많은 범죄에서 인정되고 특히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수많은 민생범죄의 피해자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송치라는 제도가 있던데요. 고소인이라든가 피의자가 어떤 이의 제기를 하거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검사가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하는 법률로 규정의 근거가 있는 법정송치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면 다른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사건기록 전반을 다 꼼꼼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요 법정송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나중에 의견 주실 때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은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은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의무조항을 신설할지 여부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특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시간인데 박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박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랑 토론 겸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언론 기자분들이 계셔 가지고 말씀하기 좀 불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우선 소위원장님, 김승원 간사님 법무부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보셨잖아요. 소위원장께서 법무부 차관한테 이러이런 걸 검토하면 좋겠다. 국회에서 소위원장으로 하실 때하고 지금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다음에 차관한테 말씀하시는 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오늘 1소위가 예정돼 있던 것은 지난주에 예정돼 있었고 어제 장관 지명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 소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게 조금 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1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하는 단계인데 장관 지명자께서 차관 상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힘에서 이런 일 있었다고 그러면 민주당 위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위원장께서 다른 분란의 소지를 스스로 없앤다는 차원에서도 오늘 이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민주당 위원님께서 대행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회의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의안 제1항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전건송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법에다가 이걸 규정할 것이 아니고 형소법 자체에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건송치라도 뒤야 한다 이 이야기는 김민석 지금 당 대표가 국무총리 하던 시절에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단 거기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위원장 하시던 외부위원이 그만두고 나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개별법에다가 이런 걸 두는 것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으니까 사건송치라도 다 해야 된다 하는 원칙적인 말씀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다가 규정을 두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늘 2항에도 나옵시다라는 스토킹범죄 이런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여러 단체에서 어떤 처벌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법이 생길 때마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한테 송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조항들이 다 개별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뭘니까, 이게 지금? 이 사법체계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이것은 오늘 1소위에서는 통과시키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별법에다가 범죄의 구분을 해 가지고 사건 송치를 하나 마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안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법안1소위는 아마 제가 법안1소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회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법안1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위원장을 계속 맡게 된 것이고 한편으로는 인사청문회요청서가 아직 국회로 송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위원장, 사회자 역할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차관께 말한 법정 송치제도는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잘 작동을 하면 전건송치라는 별도의 특별한 그걸 확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신청이라든가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 꼼꼼하게 기록이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실관계라든가 의견을 차관께 드린 것이고 그 의견 때문에 차관께서 압박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튼 차관께서 그런 정보 제공이랄까요 그런 의견 제시를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규택 위원님의 우려가 일부 타당한 면은 있기 때문에 오늘은 1회독을 하고 논의하는 것에 방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러면 계속 토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칙 2조(적용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해석과 관련해서 제 의견은 여기 단서를 뒤 가지고 형사소송법 245조의5 1항 2호, 그러니까 불송치 규정이거든요. 그 2호에 따라서 기록을 송부한 사건 중 재수사 요청하는 사건도 수사 중인 사건에 포함되어서 송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차관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래 송치를 안 하더라도 90일간 기록 송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면?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왜 검찰……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송치는 아니더라도 송치와 유사하게 검찰이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이 규정에 따라서 검사가 직접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안 되는 실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송치 사건에 대한 송부 제도는 사건의 수사 결론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검사가 재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위법·부당이라고 하는 그런 오류까지, 부적절한 결론이라는 것까지 확인되지 않는 한 중간 영역에 있어서의 결론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90일만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건기록을, 어떤 결정을 내리는 주체자로서 당사자의 진술과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결론의 타당성만 판단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송치 송부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당사자를 직접 소환해서 진술을 듣는다든지 기록, 서면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사정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법·부당 내지는 수사절차상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던 부분들, 이 두 가지 요소들 때문에……

○**김동아 위원** 검찰개혁 전에도 불러서는 할 수 있었잖아요, 90일간 기관들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환조사 등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동아 위원**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은 하는데 수사 자체가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은 광범위한 범위잖아요. 그런데 90일 동안 순수 기록만 보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사실 그 제안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곱 가지 범죄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한다, 지금 차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일곱 가지 범죄 외의 범죄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형법에 범죄인을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는 여기에 사회적 약자라는 이 개념이 적절한 개념이냐……

저는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사회적 약자인 가해자,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은 분이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보면 생활 전체를 더 마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요. 똑같은 1억을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분이 1억을 사기당한 경

우와 부자인 사람이 1억을 사기당한 경우가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부자가 100억을 사기당한 것 그것은 보호하지 않아야 됩니까? 부자가 1억을 사기당한 것, 100만 원 사기당한 건 보호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되돌아갑시다라는 이 전건송치를 일곱 가지 범죄로 한정하는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살인도 여기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일곱 가지 범죄에는. 그런데 아까 광규택 위원 얘기한 것처럼 왜 그게 빠졌냐 하고 거기 또 추가를 해요. 또 다른 범죄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여론이 크게 일어나면 아마 또 추가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범죄의 피해자 구제를 해셔야 되겠느냐. 전건송치를 하려 그러면 전 범죄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하든지 해야지요.

그다음에 전건송치를 했을 때 그다음 시정하는 방법이 됩니까? 여전히 7개든 모든 범죄든 간에 보완수사 요구입니다. 핵심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적인 장치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남겨 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 논의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켜 가면서 일곱 가지를 하든 열가지를 하든 모든 범죄를 하든 여전히 같은 문제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차관님, 90일 동안 기록 송부받아서 채수사 요청하는 것에 제한되는 게 보니까 수사준칙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사준칙을 개정하면서 좀 확대하거나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제도개선을 요청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개정 형소법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일반 송치사건 외에 불송치 송부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만 당사자 출석을 요청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조항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90일간 그 송부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검사한테 책임이 없다는 부분이 법률상은 불분명하게 되어 있지만 수사준칙이나 검찰 내부의, 법무부 내부에서 검찰에게 책임소재를 지울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든지 내부 인사고과에서 그런 부분을 담는다든지 검사한테 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사실조사권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된다면 불송치해서 기록 송부를 한 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봐서 국민들이 ‘그래도 수사에 대해서 검사가 한 번 더 점검은 하는구나’ 이런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말씀을 드리면 권한과 책임은 함께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도 그 결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90일간 저희가 송부를 받아서 기록을 검토합니다만 저희가 결정의 주체자도 아닌 상태에서 부족함과 오류가 있는지를 열의를 가지고 찾아서 당사자, 피해자 진술을 들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상 증거로 활용할 수 없고 사실관계 확인의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에 다시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결론이 바뀔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권한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차 수사종결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지금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분명히 1차 수사기관에 부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90일간 결론에 대해서 위법·부당함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형사소송법의 제도입니다. 이것을 검사가 90일 동안 검토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제도상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도 못된다는 점을,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검찰개혁 때문에 일반 송치된 사건도 똑같은 논리잖아요. 결국은 결정을 하나 안 하나 이게 관념상의 결정권이 있냐 없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랑 90일 실질적인 차이를 본다면, 송치한 사건이나 기록 송부한 사건이나.

그리고 계속 위법·부당을 말씀하시는데 수사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은 광범위한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경찰의 엄청난 부당한 조치로 한정할 게 아니라. 부당한 수사 결론이라고 한다면 송치받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나 그거나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사건의 송치 개념은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종결한 뒤에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 즉 검찰청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 사건을 송부받아서 그 실제관계에 맞는 정확한 기소·불기소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불송치 송부 사건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사경에서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90일간 오류가 있는지만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송치를 통한 주체적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대충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송치하는 것도 결국은 경찰이 1차적인 송치라는 결정을 내려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걸…… 기소·불기소라는 권한이 있다는 말씀인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차관님, 이게 기소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소 여부는, 소추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네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께 좀 묻겠습니다.

1년에 형사사건이 한 190만 건 처리되나요? 190만 건입니까, 170만 건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사건 수로는 한 130만 건, 인원으로는 한 16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

○소위원장 김승원 130만 건?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130만 정도 된다는 것이…… 사건 처분 기준으로 130만 건 정도 된다는 것이 24년 통계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90만 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경찰의 의견 그대로 거의 처리가 되어 왔었고 그것이 지금도 맞지요? 관행처럼 한 90%는 경찰의 수사 방향, 처리대로 거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그러니까 주문 변경에 대한 비율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 경찰의 의견대로 처리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예전에 검사님들이 ‘우리는 지게꾼’ 같은 그런 표현도 있었고, 그렇지요? 지게 저서 갖고 오면 나르는…… 그다음에 도장 찍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건은, 90%는 경찰의 방향대로 거의 다 결론이 되는데 이제 주목해야 될 사건들이 한 10%로 이내의 다투거나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김동아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건은 다 검찰로 넘어온다는 거잖아요, 기소의견이든 아니면 불기소의견이든 불송치의견이든?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내사나 진정을 진행하다가 입건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법정송치 얘기를 했는데 법정송치에는 현행 2대 범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성폭력, 그다음에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이 전건송치되는 그런 죄로 넓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송치라고 해서 법정송치라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사유고.

두 번째가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있었는데 경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면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법정송치고.

세 번째가 고소인 등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고소인 등 이의신청에 의한 법정송치고요.

네 번째가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했는데 재수사가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건을 송치하라고 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건이 검사에게로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즉결심판법에 의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한테로 사건이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송치가 있고 거기에는 특히나 ‘고소인 등 피해자의 이의신청 시’ 그리고 ‘검사에 대한 요구 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법률에는 담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하에서는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이라든가 혹은 검사의 요구에 의해서 검사가 이중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는 마련이 되고 있다, 마

런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봐 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사건관계자의 불만이라든가 이의가 있으면 어쨌건 경찰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 의한 이중체크가 이루어질 것이라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안 1·2안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담는 것도 있고 저희가 예전에 행안위에서 일괄정비법에 의해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고 지금 현재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일괄정비법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가요, 의안 1·2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지금 저희가 형소법에는 70개의 법률이 있는데 그중에는 성폭력 범죄법도 있고 스토킹 처벌법들도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제명은 함께 묶어서 해야 되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다 내용을 추가하게 되면 지금의 형사소송법 부칙의 타 법 개정 방식으로는 법제 원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모은 다음에 일괄해서 별도의 법안으로 제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토론 하나 더 합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형수 간사님 토론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차관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사건 130만 건 중에서 90%가 경찰 의견대로 처리되고 10% 정도가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역할은 그 다툼이 있는 10% 사건, 그 사건들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 의견대로 처리되는 이유가 뭐니까? 명백한 사건, 증거가 명백한 사건, 다툼 없는 사건, 음주운전 사건, 무면허 사건, 대부분이 그런 사건들이고 또 무혐의 처리되는 사건 중에서도 명백한 민사 사안을 형사사건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검사가 다시. 그래서 90% 이상의 사건들이 경찰 의견대로 처리되는 것이지…… 그 10%의 다툼이 있는 사건, 그것 때문에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검찰이 보내는 사건 중에서 1건 있을까 말까한 무죄사건 그것 때문에 법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근본 시스템을 잘못 아시고 90% 이상의 사건이 경찰 의견대로 처리되니까 경찰한테 맡겨도 상관없을 것이다?

그러면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무죄 나온 비율이 얼마입니까? 예전에 영점몇 %였고 지금은 한 2~3%쯤 되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전체 통계로는 1% 남짓 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그 1% 사건, 1%만 검찰과 의견이 다른데 법원은 뭐 하려고 존재합니까? 형사재판 왜 합니까? 그 1% 사건, 아까 얘기한 경찰에서 송치되는, 검찰에서 다투는 그 10%의 사건 그것 때문에 검찰이 존재하고 법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검사를 할 때 한 달에 사건을 200건, 300건 이렇게 송치를 받으면

그중에서 검사가 직접 손을 대야 될 사건들 한 몇십 건쯤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에 수사 지휘를 다시 내려보내야 될 사건도 또 몇십 건쯤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건들을 처리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전체를 다 내려보내지 않고 또는 전체를 다 직접 수사하지 않고 어떤 건 내려보내고 어떤 것은 직접 수사를 하느냐?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명백히 빠진 부분은,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은 경찰에 내려보내서 그것만 보완해 갖고 다시 보내라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진술 자체가 이 진술이 맞는지 저 진술이 맞는지 그럴 때는 직접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서, 판사가 직접 심증을 형성하듯이 검사도 기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심증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직접 수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져도 국민 인권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율이 어떻게 되었건 1명의 억울한 피해자라도 생기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수사기관이건 어느 공무원이건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절차상 잘못도 생길 수 있고 또한 그사이에 부정과 비리도 극소수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소청이라든지 검사가 직접 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인을 해당 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사법통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형수 위원 여담입니다만 마지막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김승원 간사 또는 지금 현재 장관 지명자와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득이 안 됐었다. 혹시 장관으로 가시게 되면 차관부터 제대로 설득 좀 잘 하세요. 왜 이게 필요한지를 제대로 밀도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주고받고 계셔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권 조정, 당시의 통계가 그 전 5개년간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주문을 변경한 사건의 통계 비율이 0.5~0.6%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변경됐고. 그래서 0.5~0.6%를 재수사요구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불송치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불송치 제도 도입 이후에 2022년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여 가지고.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개년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하고 그리고 검사가 기록을 90일 동안 검토해서 재수사 요청을 한 게 한 2% 정도 됩니다, 재수사 요청 비율이. 그래서 재수사 요청을 해 가지고 경찰이 재수사해서 검사가 주문을 변경하는 비율이 3년간 0.47~0.7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송치 제도하에서도 그 전에,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권이 있을 때 그 변경된 비율이 그대로 불송치 제도하에서도 재수사 요청을 통

해서 그것이 걸러지고 있다라는 통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불송치 제도는 그랬기 때문에 도입이 된 건데, 다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또 두텁게 더 보호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개 여쭙볼게요.

법정송치라는 게 전건송치, 법으로 정하는 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대 범죄와 이의신청 사건송치, 시정조치요구, 재수사 요구에 따른 송치 등을 포괄해서 다섯 가지 유형을 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전건송치되는 걸 법으로 정해서 그걸 법정송치라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현재도 있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의해 생기는 것도 있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10월 2일 이후에 개정될 형사소송법에 따른 송치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전건되는 걸 법으로 정해 놓은 전부 다 송치되는, 전건이 다 송치되는 그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정송치 제도고요. 전건송치 제도는 사건 유형의 구별 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하는 것을 전건송치라고 말씀……

○김태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건송치가 법으로 정해 놓은 것 말고 모든 걸 다 보내는 게, 전건송치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취지네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런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서류 같은 걸, 나는 이게 법 바뀌고 나서는 그림이 잘 그려져서…… 수사권 없는 사람이 서류 받아 가지고 서류 잔뜩 보고 나서는 자기가 또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희한하잖아요. 안 희한한가?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내가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기소 여부 결정하는 사람이 수사도 못 해, 사람 부르지도 못 해, 그 사람 말하는 걸 증거로 쓰지도 못 해, 그러면 결국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류 검토네요, 증거 검토하고, 대개 증거라는 게 서류로 오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따르면……

○김태규 위원 내가 내 그림, 이미지화를 한번 시켜 보고 싶어서 그래요. 검사가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이미지화를 시켜 보려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당사자를 면담해서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만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당사자 불러서 물어보는 건 일단 빼고, 서류 넘어오는 것, 기본적으로 그것은 증거로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증거로 된 것은 지금 수사기록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 유효타로 쓸 수 있는 것은 수사기록 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수사기록 보고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기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행위를 할 수는 있지…… 지금 말하는 취지가 본인 불러서 사실 확인이나 들어 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참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참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사기록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미지화를 하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결정에 이르는데 자기 스스로 유효타가 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한 건 없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유효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규 위원** 그게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

○**법무부차관 이진수** 증거 수집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은 본인이 생산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증거 수집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증거 수집 활동도, 자기가 증거와 관련된, 증거로 쓸 만한 것과 관련된 유의미한 행위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결정은 또 자기가 하네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하도 신기해서, 희한한 나라입니다.

○**김용민 위원**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김승원**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차관님, 지금 검찰개혁을 왜 했는지 다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최근의 사건 하나만 물어볼게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범 등에 따르면 검사가 쌍방을 사건처럼 구속된 피의자들 불러 가지고 연어 술파티 하고 진술세미나 열고 거기서 만들어진 진술, 증거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제출할 수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엄청난 발전인 거예요. 인권침해를 엄청나게 막아 낼 수 있는 거예요. 사건 조작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100% 다 제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 조작을 차단한 겁니다, 특히 검사에 의한 사건 조작.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어땠습니까?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내고 검사가 뻔뻔하게 공문서 위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사도 대한민국이다, 검사가 국가다, 왜 중국 말만 듣냐, 대한민국 검사의 말을 들어라, 법정에서 그딴 헛

소리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제 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과거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과오도 있었고 수사 절차상 어떤 위법행위를 한 그런 잘못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지금 우리가 막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개혁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0.2%, 0.3%도 안 되는 사건이고요.

○**김용민 위원** 그런 사건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 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아마 힘 있는 사람들 얘기할 것 같은데 힘 있는 사람한테도 사건 조작하는데 힘 없는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사에 의해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굉장히 큰 사법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신뢰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검사라는 사람들은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이해관계 없이 혹은 정치적인 목적 없이 부패하지 않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라는 신뢰를 쌓아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을 수 있게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신뢰를 더 쌓을 것인가, 개정된 법들에 의해서 정부는 신뢰를 어떻게 더 쌓아 갈 것인가를 잘 고민하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 의견도 내고, 개선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필요한 것은 국회랑 계속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료제출 부탁할 게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자료제출 요구요?

○**김태규 위원** 예, 보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얘기를 좀……

○**소위원장 김승원** 1분 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차관님, 검사 직무별 배치 현황이나 공소청 개청 후의 검사 직무별 배치 계획 등등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하나도 제출이 안 됐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공소청 직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제 관련해서는 행안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출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계획도 있지만 다른 내용들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아예…… 대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꾸 자체가 없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상황에 대해서 더……

○**김태규 위원** 설명 부족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아예 없으니까.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지요.

과거 검찰의 잘못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혹시 차관님 옛날에 검사 생활할 때 대한민국 검사라는 용어를 써 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용어를 써 봤습니다.

○**김태규 위원** 써 봤지요? 그만한 자긍심이 있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후배들이 법 이런 식으로 바뀌고 나서 그 옛날 선배들의 자긍심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검사들만큼 할 자신 있습니까? 오히려 선배들한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검찰청법을 이딴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이딴 식으로 만들었는데 무기력하게 당하고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그저 무기력하게 무너져 가는 이 검사들, 오히려 선배들한테 부끄러워하세요.

마치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원장님,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폭력범죄법하고 스토킹범죄 부칙에서 지금 적용례에 수사 중인 사건의 위당이 좀, 이 수사를 협의로 불지 광의로 불지 몰라서 재수사 중인, 그러니까 불송치 되어 재수사 중인 사건을 넣도록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건 같은 날짜로 불송치했지만 어떤 검사는 서둘러서 10월 2일 기준 이미 재수사요구가 내려간 게 있을 수 있고요, 아직 기록만 들고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완한다면 10월 2일 기준으로 불송치결정이 돼서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해 주시면 사건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두 권이고요, 부록 빼고 앞의 본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지금 총 70개의 법률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 정비 사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룹핑하니까 7개 항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항목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법률들은 지금 개정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면서 다른 개별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 관련 규정들이 남아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시한 선원법, 근로기준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이런 것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또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의원발의안에 들어간 내용 말고 검토의견에 보시면 현재 안에는 단순 정비만 들어 있습니다만 법사위 소관 4개의 법률, 공수처법·특검법 등 이렇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되는,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을 준용하고 있어서 개별법에다가 그에 준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권을 넣어야 되는 법률들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그러한 수사권들을 직접 법에 명시해야 되는 내용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있는 특별검사 그리고 아직 수사권이 필요한 선관위 특검, 개별 특검법에 있는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이나 개별 특검들에는 수사처 검사와 달리 수사기록의 전자적 관리라든가 압수수색 영상녹화 의무화라든가 진술 녹음 의무화한다든가 고소사건 3개월 이내에 수사 종료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수사권 관련 규정들은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도 군검사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KICS와 연동시켜서 수사기록을 전자화하는 내용이라든가 압수수색 검증할 때 영상녹화하는 의무 규정이라든가 피의자 진술 녹음하는 그런 규정,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들어간 수사권 관련 의무조항들을 군사법원법에 넣어야 되는지, 넣어야 되지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통신비밀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긴급통신제한 조치들이 있는데 그 규정이 빠지게 됩니다. 수사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 저희가 뒤에 조문을 예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증권 관련 범죄가 중수청 관할 범죄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중수청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발의안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조문별로 보시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는 단순 정비 사항, 의원발의법안에는 고위공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검사에 준하던 지위에 있던 수사관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10페이지도 조문 정비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의 제10조를 보시면 기존에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이 파견됐을 때 정원으로 넣었습니다. 똑같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공수처로 파견되면 정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밑에 정비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사처 검사한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들입니다. 수사처 검사의 수사권의 범위 및 내용을 제23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처 검사의 수사—군검사 수사는 제외됩니다—에 대해서는 형소법 제2편제1장(수사)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조문들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피의자 출석요구, 제3자 출석요구, 각종 영장 청구하는 것 그리고 압수수색…… 강제수사권이나 임의수사권과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 대한 부분이 빠졌지만 지금 수사처 검사한테는 동일하게 부여해야 될 그런 조문들을 찾아서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수사처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2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라든가 정보통신서비스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등 이것은 수사처 검사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수사처 검사에 수사권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부분도 4항에 넣어서 보완했습니다.

23조의3항에는 수사처 검사의 구속기간을 어떻게 할지 그동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공소할 경우에 공소권이 있는 경우에는 20일까지, 수사권만 있는 경우에는 10일만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야 됩니다.

23조의5항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6조의2는 수사처 검사와 검사 간 그리고 군검사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요. 그동안 수사처 검사가 수사권만 있어서 공소청 검사한테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18페이지에 보시면 2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재정 관할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재정신청을 조정하는 부분도 추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특별검사보도 지금 공수처법과 비슷한 사항으로 수사권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수사권 부분을 추가하고 있는데 아까 제외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록을 전자화한다든가 영상녹화·녹음 의무 이런 것은 지금 수행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공수처 수사와 비슷하게 내용들을 그대로 넣었고요.

선관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37페이지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추가해야 될 수사 관련 의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재정신청을 그대로 고등법원으로 두었습니다. 군사법원의 1심은 군법원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1심 군사법원으로 재정신청 관할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재정신청은 그대로 군사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통비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통신제한 조치라든가 통신사실확인 요청 이런

권한들을 삭제하면서 대신 그대로 두어야 될 수사처 검사라든가 특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계속 권한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46페이지에 보시면 ‘수사처검사등’이라는 약칭을 통해서 이러한 검사들은 계속 긴급통신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권한을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쪽 들어가 있고요.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본시장법의 증권 관련 범죄는 중수청장으로 관할이 정해졌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추가하는 내용을 저희가 개정안에 없던 내용 추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박형수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지금 다 형사소송법 부칙에다가 넣겠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넣고자 하신다면 형사소송 부칙에는 답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형사소송법 부칙에서 떼어 내서 별도의 법률안으로 다시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것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왜 보고를 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것도 같이 10월 2일에 맞춰서 정비돼야 돼서 시급히, 10월 2일까지는 수사처검사라든가 특별검사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내용을 넣어 주셔서 체계를 정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아니네……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간사님.

기관 의견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그리고 이두희 국방부차관께서 추가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형소법 개정에 따라서 공수처검사의 수사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인데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칙 개정으로 할 사항인지 우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 제23조의2제1항은 수사처검사의 수사권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수사 절차상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 형소법에 신설된 고소인 등의 수사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 제245조의11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정의견 제23조의2제4항은……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박형수 위원 차관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 놓고 이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일단은 기관 의견 듣고 그다음에……

○박형수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 이게……

○소위원장 김승원 제일 먼저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하기로는 이게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지금 형사……

○박형수 위원 발의된 것 중에서 들어간 것 중에서 전문위원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 법률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추려 놓은 겁니까? 그런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여기 3자 대비표의 개정안 두 번째 칸은 지금 부칙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저희가 수정의견 단 것은 이것 다 받고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넣어서 조문 정리를 한 겁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수정의견은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거고 원래 개정안은, 이 두 번째에 있는 개정안은 이게 형사소송 부칙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내용들을 어떻게 형사소송 부칙에다 이것을 넣노, 이게. 나 참 어이가……

일단 진행을 합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되셨지요?

아니, 9페이지 보면 안 부칙 15조제43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박형수 위원 세상의 모든 법률을 형사소송 부칙에다 다 넣어라, 그러면 아예.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어쨌건 형사소송법 큰 줄기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면 나머지 개별법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해 주시면 법에다 넣고 법사위에서 다 같이 합의해서 처리하면 될 일인데 계속 반대를 하시니까, 필리버스터 하실 것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개별법을 그러면 상임위에서 만들어서 올라와야 되고 우리 법사위 소관 법만……

○소위원장 김승원 이게 다 법사위 법안들입니다, 보시면.

○곽규택 위원 법사위 소관 법안을 따로 해 가지고 올리셔야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형수 위원 그 법률을 개정해야지 이것을 형사소송 부칙에다 넣는 게 어디 있어?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기관 의견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무부차관님 하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승원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면 수정의견 제23조의2제4항은 수사처검사가 다른 법률에 부여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대해 검찰청법·형소법에 정한 검사의 권한 규정만을 준용한 현행 법률에 비해서 권한을 확장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경의 권한을 일별하여 분석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컨대 수정의견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체포 목적의 무기 사용 권한, 규정 등도 공수처에 적용 가능해진다고 볼 소지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수정의견 제26조는 공수처 송부 사건을 보완수사요구 할 수 있도록 정하여 그간 지적되어 온 입법 공백을 해결하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직무배제, 교체 요구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규정도 준용되도록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차관님, 의견 얘기하실 때……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잠깐만요……

○박형수 위원 내가 요청 좀 하려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간사님, 잠깐만요. 말씀 듣고 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의견 얘기하실 때 이것을 형사소송법 부칙에다가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법률에 가서 개정해야 되는 게 적절한지 그 의견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같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못……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만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일단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일단은 기관 의견 말씀하시고요. 나중에 질의를 하시면 그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계속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23조의3, 23조의5는 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사가 신병을 인치받아 관리하는 근거 및 검사 구속기간에 대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수정의견 제23조의3제1항에 검사에게 인치라고 하는 부분을 검사에게 인치(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인치로 본다)라고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검사가 사경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을 때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을 공수처 송부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형소법 제203조에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형소법 205조도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의 경우에도 사경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10일, 검사는 10일 플러스 10일,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등과 관련해서 먼저 전문위원 수정의견의 6조제2항에 따르면 수사처검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군검사 등을 열거하고 수사처검사라고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개별 특검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조에 규정한 수사처검사 등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처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형 집행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73페이지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방식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재판 관할 개정 형소법에서 재정신청 관할 변경 시기를 고려해서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쟁점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수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먼저 안 2조의 1호 거목 관련해서 중대범죄수사처장 및 3급 이상 중수청수사관을 수사대상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의견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처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관을 포함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사대상의 범위를 경찰공무원인 총경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까지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경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무관은 본청과 각 지방청에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서장인 총경급이 일선 현장에서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 폐지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그 구성에 경찰공무원 출신이 다소 포함될 것이므로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권 재편 과정에서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강화를 위해서는 총경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게 상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개혁에 따라 수사권은 공수처·중수청·경찰이 나누어 갖게 되는데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이 필요하고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를 수사·기소하도록 설계된 독립기구인데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가 중수청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23조의2부터 23조의5까지 및 27조의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부칙이 아닌 공수처법 본문 규정에 공수처검사의 수사 근거를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안 26조의제2항 및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양 기관 검사들의 보완수사 내지 추가수사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다만 검사와 사경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검사와 공수처검

사 사이에도 적용하는 것은 공수처검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우려할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의 1심 판결과 해당 사건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서는 이렇게 판결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추가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로서 공수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권력형 부정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패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로 현행 형소법상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독점주의 제도하에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청검사와 군검사는 공수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공수처검사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수사 의뢰를 받을 때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검사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지위에서 공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공소청검사의 공소유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뒤야 한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고소인 등이 없는 사건 또는 이들이 재정신청을 포기한 사건에 관해서는 공소청이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 안 23조의3제1항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사건의 경우 공수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중앙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특정인을 법원 또는 지정된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절차로서 형사소송법 역시 아래와 같이 인치의 개념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검사와 같이 관할 구치소에 신병을 구금하고 있으므로 검사에 대해서 별도의 인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란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은 공수처검사가 중앙지검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할 당시 피의자를 인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1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공수처검사와 공소청검사 사이의 사건 송부 절차에 관하여 인치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부적절하고 공수처법 제26조 1항이 공수처검사가 중앙지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개념을 활용한 게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 10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의 공수처 수사관 정원 포함과 관련하여 이는 종래의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그대로 검찰을 중수청으로 바꾼 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상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검찰이 폐지되는 이상 중수청 소속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을 파견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공수처의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 26조의2에 대한 것입니다.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사건으로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이송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일곱 번째, 그 밖의 규정 정비와 관련된 안 28조, 39조제1항 및 47조 등에 관한 것은 동의합니다.

이상 공수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군사법원법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제231조의2 관련해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군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민간과 동일하게 녹음·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자화하여 절차적 통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군 형사사법기록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과 같이 입법이 추진될 경우에는 본문의 의미 명확화를 위해서 자구수정과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충분한 유예기간 약 7년 정도를 부여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86조는 군검사의 공소청 검사에 대한 사건 송치 관련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머지 121조, 122조, 178조, 179조, 228조의3, 236조의6, 473조, 474조, 475조 등 나머지 조항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1회독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결하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지금 법무부차관님이나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형소법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굉장히 사실 개별법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지금 형소법 부칙으로 일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검사라는 형소법의 어떤 지위를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서 이제 수사는 못 하는 검사라는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검사를 인용하고 있는 군검사, 공수처검사, 특별검사에서 말하는 그 검사라는 개념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민주당에서 말씀하셨듯이 검사가 괴물이라 하면 이제는 군괴물, 공수처괴물, 특별괴물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에.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따오다 보니까……

보십시오.

검사가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을 따왔어요. 그러면 군검사가 아니지요. 군사법경찰관, 공수처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겁니다, 체계가. 그런데 지금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개별적인 법에 따라서 지위를 규정하려다 보니까 지금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송부와 인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원래 송치라고 하는 게, 사건과 기록은 송부지요. 신병에 대해서 인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치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송치하고 송부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기록은 송부하는 것이고 신병을 인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그동안 신병의 인치에 대해 가지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도 서로 틀리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차제에 어떤 법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적인 법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걸 부칙으로 다 묶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10월 2일이라는 시한에 촉박해 가지고 이것을 자꾸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때문에 10월 2일 날 발족하는 것은 발족하는 대로 두고 나머지 법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그런 법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내셔야 됩니다. 법무부나 공수처나 국방부에서 우리 소관 법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맞겠다 하는 걸 이제는 내셔야 돼요. 국회에서 이렇게 다 묶어 가지고 하는 것에는 저는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결론을 안 내리신다고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칙으로 전체 묶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부칙이 개정되면 그 내용이 개별법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수석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저희 형사소송법 부칙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 개별법에 해당 조항이, 그 부칙이 변경된 내용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 개별법을 볼 때 불편함이 없이 개정된 내용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묻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어차피 부칙도 약간, 법률 개정이 약간 약식의 방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는 건 문제는 없으신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부칙은 복잡하지만 어쨌건 국민들께서는 개별법을 보시기 때문에 그 개별법을 보면 부칙의 내용에 따라 다 수정이 되어서 그냥 전체의 법을 다 읽어 보시고 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잖아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태규 위원 아니, 수정된 게……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곽규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김태규 위원 변호인지, 변호나 오류, 오기 이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내용인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지금 간사님 말씀하고 위원님이 궁금한 건 다르고요. 이제 부칙……

○김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지 그걸 묶어 가지고 마치 번호 바꾸는 거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그냥 사실관계를 묻는 거니까 화내실 일은 아니고……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소위원장 김승원 그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 번 더 사실 확인 후에 말씀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김태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행정처 차장님, 이 의견이, ‘일괄개정 방식 관련해서 개별법을 개정할 건지, 부칙으로 할 건지 특별한 의견 없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원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하지요? 일단 그걸 수치화는 못 하겠지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김태규 위원 더군다나 1:2:3심까지 거쳐 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앞의 수사 부분보다도.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보다도 재판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말씀 주시……

○김태규 위원 기존의 방식으로든 중요한데 지금 형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률가인 검사가 제대로 법률적인 정의를 못 하고 그게 전부 다 법원으로 넘어올 겁니다, 수사기관이 한 걸. 그러면 오히려 법원의 부담이 더 커지고 법원이 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수사까지 해야 되는 지경까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법원의 위상을 생각하고 앞으로 더 강화될 위상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무슨 여기에 특별한 의견 없음, 이거 너무 무책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법무

부도……

저도 법무부 별로 칭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법무부도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칙 개정으로 할 사항인지 검토 필요’. 껴름칙하다, 뭔가 마음에는 안 든다 그러면서도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 표현이라도 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의견 없음이라고, 좀 무책임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규 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실질적인 내용 부분이 있는지, 개별법으로 그걸 고쳐야 되는지, 그러면 개별법으로 고쳐야 될지 말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검토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조문별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의견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공수처 차장님,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조문을 찾다가 다 제대로 못 찾았는데 공수처에서 수사한 게 전부 다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건 아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떻게 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지요? 수사할 수 있는 그 전체, 만약에 비율로 따지면 한 몇 %쯤 됩니까, 직접기소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지요, 직접기소 할 수 있는 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경무관 이상 경찰관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부 공무원이나 이런 쪽은 전혀 못 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수사권만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원래 애초부터도 검사라는 용어를 쓰기가 부적절한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원래 검찰총장이라는 용어,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고려하면 검찰청 밖에 검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도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공수처법이라는 법이 생겼지요. 그러면서 일부 공소권을, 기소권을 가졌는데 그 일부 기소권을 가진 걸 빌미로 해서 모든 수사관들이……

사실은 저는 수사관이라고 봅니다, 공수처 모든 수사 주체들이. 검사라는 용어를 갖다 쓰지요? 굳이 그렇게 공소권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검사에 한해서 검사라는 용어를 쓰면 맞지 나머지는 다 수사관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까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까지 바뀌니까 이제 검사가 힘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일부까지도 힘없으니까 그걸 오히려 인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겠다는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히거든요. ‘검사라는 이름을, 너

네들은 힘없는 검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검사라, 그리고 기존의 제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
신들이 놓친 그거는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렇게 좀 읽히는데.

항변 한번 해 보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위원님의 생각도 잘 들었습니다만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립 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가 있고 수사권만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소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검사로서의 객
관적인 의무 같은 것을 잘 따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검사라는 용어를 입법적인 결단
으로 쓰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권한을 쟁취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 공수처법에다
규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체계상 별도로 확실하게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음
면 국민의 권리를 심하게 침익하는 그러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이지 저희가 다른 뜻으로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공수처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수사·기소 분리
인데 수사 부분만 가져가고 기소 부분은 오히려 검찰한테 다 넘겨주는 게 안 맞겠습니
까? 그게 오히려 더 지금 수사·기소 분리의 전체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제도개선 차원에서 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 부분은……

○**김태규 위원** 지금, 보세요.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지지 않습니까, 검사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검사는 오히려 보완수사권 다 가지고 여전히 수사권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
까. 그렇지요? 그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그게 지고지순한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에 따라 가지고 제도를 바꾸려면 앞으로 공수처도 검사라는 직함 다 떼고 수사관만
남기고 그다음에 기소권과 관련된 거를 전부 다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권
받아 가지고 일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수미일관하지 않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숙의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맞다는 이야기네.

○**김태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직 더 있습니다.

차관님, 오늘 차관님 좀 피해 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이전에 차관님이 저 보고 특검을 유지하는 게 더 효율
적이라고,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검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특검도 나와야지요. 특별검사, 특별수사관법하고 특별검사법하고
두 개를, 앞으로 특별검사 출범시킬 때 두 개로 나누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지요?
그게 수사·기소 분리의 지고지순한 원리에 따르면 수미일관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사는 앞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와 같은 검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과 같은 특별검사제도를 과거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솔직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특별수사관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수사관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다시 검찰청으로 보내서 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게, 검사가 공소유지하게 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 부분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차관님 말씀대로 수사·기소를 합쳐 놓으니까 효율적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특검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특검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면요,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집권하거나 집권한 세력이 아닌 오히려 정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쪽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특검제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애초에 미국에서 처음 출발할 때도 그렇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는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건 뭐 대단한 이해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러한 정권 반대편에 있는 정치적 세력을 위해서 운영돼야 될 특검제도가 오히려 정권을 가진 쪽에서 효율적으로 상대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남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나는 토론한다고 손들었는데 왜 지나갑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아, 그러셨나요? 박형수 간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위원장님, 법안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곽규택 위원** 법안 관련된 것이지, 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부탁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전체적인 것 말씀을 하시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토론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법안 관련된 거 얘기하기 전에 짧게, 법무부차관이 특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합니까? 특검은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의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에 특검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권한 세력보다는 그 반대 세력인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게 그게 특검제도 취지예요. 그것을 김태규 위원이 물었는데 그거 모른 척, 대답 안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법무부차관 이진수** 어떤 제도 운영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

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와 같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
다, 도대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 공수처에서 얘기한 거 또 법무부에서 얘기한 거 등등 다 종합해 보면 하나하나의
법률에서 정말로 정치하고 신중한 논의들이 필요한 그런 개정안들이에요. 이것을 한꺼번
에 다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안에 넣는다고요? 그러면 다른 법률들은 왜 존재합니까? 앞
으로 법 개정할 때는 형사소송법 부칙만 다 개정하면 되겠네. 다른 법률 개정안은 왜 필
요해요? 나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칙 개정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이나 명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
인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부칙 개정안, 그것도 다른 법률의 부칙 개정안으
로 이렇게 한나라는 게 이거는 법 형식상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어떤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돼 있
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이거는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소법 부칙 개정안으로 개정해도 괜찮겠다,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무부, 공수처, 법원행정처 각 기관에서도 그렇게 구분해 주세요. 그거 입법
사항이라고 맡겨 놓는다고……

공수처, 법무부 다 법률가들 아닙니까? 법률가들이 법에 대한 의견도 못 내요? 의견도
없어요? 해당 법률의 조항에 가 가지고 그거를 개정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지
이것을 형사소송법 부칙에다가 다 넣어 놓고 이것을 개정하겠다?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
지 않은지 그 판단도 못 하고 그거 그냥 국회에다 맡긴다고만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각 기관에서도 그것을 구분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의사국 그리
고 입법조사처 등과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결론에 이
르러서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도 부칙에 넣어서 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국회에 어떤 규
정이 있지요? 부칙에 담아서 개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정에 대해서는 박형수 간사님께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규정 여기 다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있는데 그걸 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규정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그간의 경과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항에 대해서 나머지 전부 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2항부터 6항까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지금부터 설명할 사항은 내용적 변경이 아니라 경미한 자구 수
정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검사가 더 이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 ‘수사절차’ 이렇게 용어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공소’, ‘공소절차’ 이렇게 수사 절차 안에서 분리해서 명확히 해 줘야 될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공소청은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명으로 되어 있어서 공소 관련 전체 기관을 의미하실 때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하셔야지 조문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 수정들이 있습니다.

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82페이지에 보면 개정안 조문에 ‘공소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을 단순히 공소청으로 바꾸면 안 되고요. 이번 정비를 할 때에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렇게 명확화한 조문들이 많이 보이실 건데 이렇게 저희가 발의안에 넣은 이유는 공소청법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수준이고요.

다음 83페이지에 보면 지금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고 관계’, 이렇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건데 기존에는 여기에 검사들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공소업무·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용어를 정비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경미한…… 이렇게 수사 안에서 공소를 분리해야 되는 그런 조문들을 정비하는 게 이번 송치 후 검사의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비는 저희가 성폭력범죄법이라든가 스토킹범죄, 성매매 처벌법 등에 피해자 보호 등과 많은 조문들이 들어가 있는데 검사는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를 통해서 권한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관련해서, 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면담’ 이런 내용으로 명확히 형소법 조문을 명시하면서 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예시적으로 보시면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전담 검사제가 있는데 전담 검사제는 기존에 검사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형소법 개정에서 조사라는 용어도 안 쓰기 때문에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소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및 면담’ 이런 조문들이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많은 조문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에도 수사기관 안에 검사가 그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분리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수사기관, 법원’ 이렇게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조문들이 이 조항들의 정비 내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했던 것들이 협력관계로 바뀌면서 ‘검사의 지도·조언’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치료감호법이나 이러한 3개의 법률에서 내용 추가해서

넣어야 될 부분을 넣었고요.

다음에 113페이지, 재정신청 관할법원이 지방법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관련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별법, 114페이지인데 이런 재정신청 관할 법원의 조정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부칙에서는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6개월이나 1년으로 유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맞추어서 시행일을 조정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7항까지 다 하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말씀하신 파트에 있어서 법무부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수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공소로 많이 대체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공소 업무가 공소제기 업무도 있고 공소유지 업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토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소로만 용어를 변경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여지가 논란이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공수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거는 단순한 자구 수정이라 위원님들께서도 감안하셔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 다음에 다시 한꺼번에 토론합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러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4항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소관 법률 3개 사항에 대해서, 특사경법, 폭처법, 검사징계법 부분을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5페이지입니다.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현행 대부분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관계 기관들의 제청이나 보고를 받아서 특사경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검사 수사지휘에 대응해서 지명 절차로 봤는데 이것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협력관계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특사경법에 특사경 지명 절차를 개정할 필요가 없으신지 이런 부분을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위자료 9페이지입니다.

(김승원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과 사회교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에서 지방 검사장이 수사개시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징계·해임·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61년 법 제정 시부터 들어간 조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삭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징계법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정비와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와 관련이 없어서 이 부분은 따로 위원회안으로 분리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단순히 자구 정정 수준이라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나머지 기관명, 직책 관련 규정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사관 신분 관련 정비도 용어 정비 수준이고요. 그동안 수사 직렬들이 형사·법무 직렬로 내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의견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검사와 특사경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사경 지명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전문위원 수정 예시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사경 지명 절차는 기본권 보호를 담보하기 때문에 사법 통제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행정공무원에게 공권력 행사 권한인 사법경찰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 통일적 관점에서 해당 특사경의 수사 수요와 적정 규모를 심사하여 지명 인력과 규모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상 특사경에 대한 지도 권한이 있고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 유지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공소청에서 지명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지금 폭처법 제10조 관련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크게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범죄 미보고 또는 부실수사 등을 통한 사경의 사건 암장 우려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폭처법 위반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고 사법 통제의 중요성이 고려돼서 개정 형소법에서도 보완수사 요구 및 시정조치 관련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이 유지된 측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관련해서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칙으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법률이기는 합니다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제3항의 위원 구성에

검찰청으로 표기된 부분도 공소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전반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법 개정 부분에 관해서 업무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공수처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곽규택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제가 마음대로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곽규택 위원 잠깐만, 아까 소위원장님이 오늘 4항까지만 하자 그랬어요.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아, 그래요?

○곽규택 위원 그렇게 두 번 말씀하시고 아까 나가셨거든요. 오늘 4항까지만 하자 그러셨어요.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러면 소위원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곽규택 위원 다시 오신다고요?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예, 잠시……

○곽규택 위원 잠시 나가신 겁니까?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예, 잠시 나가신 거라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 제안대로 5항은 보고를 지금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니 5항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 자료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요. 정성호 의원안입니다.

2쪽입니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

원에 국방부차관을 포함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군사법원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사건의 이첩·이송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국방부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추가하여 형사사건 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특별한 수정은 없고요 그리고 관계 기관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국방부차관의 협의회 위원 추가에 따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국방부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 시스템 연계 개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일을, 개정안은 3개월로 하고 있는데 3개월보다 여유 있게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 국방부차관이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되더라도 협의회 연속성은 유지되므로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행 시기를 3개월에서보다 1년 정도로 유예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유예 기간이 최소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공수처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정성호 의원님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용민 유예 기간을 지금 1년 정도로 두자라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김승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하실까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킷스랑 연결하는 게 5항 법률개정안 내용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김승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차관 이두희 유예 기간 1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문서만 해당이 되고 6항, 다음 항에 보면 녹음·영상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구축하는 데 아까 앞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년에서 7년 정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중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임시회의록